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장은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5일
한국환경보전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2024년 12월
- 주관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이하 “보전원”이라 한다)
- 사업규모**
 - 경기도 화성시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자부담 제외)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비	
대기오염방지시설	753,500	418,500	167,500	167,500	
사물인터넷(IoT)	753,500	418,500	167,500	167,500	
합계	1,507,000	837,000	335,000	335,000	

※ 선정금액에 따라 지원대상별 총사업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비)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교체 소요 비용 최대 90% 지원 [10% 이상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 부담)]
- 저녹스버너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버너 교체 소요 비용 최대 90% 지원 [10% 이상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 부담)]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비용 최대 90% 지원 [10% 이상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사업자 부담)]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설치 지원사업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및 다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대규모 조리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하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추진
-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등 조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후 선정된 생활악취 발생시설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저녹스버너)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버너(설치 연도 기준 10년 초과 설비)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지원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보전원에 신청서 제출
 -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최신 현황(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저녹스버너로 검색)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보전원(주관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구비서류 검토, 심의위원회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선정 이후 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선정사업장-설치업체)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업체)가 직접 수령 하도록 명시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방지시설의 경우 해당 공고 차수에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 사물인터넷의 경우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지원대상 기준으로 접수된 선착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첨부 3. 붙임자료의 참여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작성 등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_x, NO_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또는 다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중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
- 조리시설 미세먼지·악취 저감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생활악취 발생시설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저녹스버너)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설치 우선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대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3대까지 지원 가능(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3대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장별 1대를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지원

-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 ① 연료전환(B-C유 → LNG) 사업장
- ② 연료전환(경유 → LNG) 사업장
-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 설치 기준 10년 초과 노후 저녹스버너(기존 저녹스버너보다 대기 오염물질 개선 효율이 높은 시설)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설치 우선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 우선순위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② 신규 시설 중 5종(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 ③ 신규 시설 중 4종(가동개시 신고시 부착완료 대상)
- ④ 기존 시설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지설
- 방지지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지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지설(지원받은 방지지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함
 - 정부지원 내역 확인(신청자 확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지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은 저녹스버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4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2023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지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이 원칙, 추가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지설(저녹스버너) 지원서 제출 시 별도로 신청서 제출 및 추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 배출구별 참여신청서, 설치계획서, 설계내역서, 예산, 구비서류 등 별도 신청 및 제출 필요
 - 사물인터넷의 경우 1개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사물인터넷만 지원 가능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 사양 및 재질(FRP, STS 등)에 따른 보조금 상향 신청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및 보전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 및 보전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할 것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지설(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지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지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 시 설계 기준 준수 필요
 - THC 등의 저감을 위한 **활성탄량은 체류시간 0.3초 적용** 산정
 -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된 방지지설에 한하여 교체 전 방지지설 설치 용량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단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방지시설 시설 용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교체 후 방지시설 용량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노후 저녹스버너의 교체 비용 지원 기준 준수 필요
 - 기존 저녹스버너 설치기준 10년 초과 시설을 대상
 - 기존 저녹스버너보다 대기오염물질 개선효율이 높은 시설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및 현장 확인
- 본 사업은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업 진행

□ 준공조건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 설계 근거, 변경도면, 예산 등) 보전원으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 제출된 설치계획서 및 가동개시 된 인허가증은 동일하게 설계될 것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 방지시설 설계 배출가스량(표준상태) 대비 자가측정 배출가스량은 설계 풍량 대비 80% - 110% 범위에서 배출되어야 함
 - 오염물질은 제시한 저감 효율을 달성해야 함
-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될 것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5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02. 05.(월)(09:00) ~ 2024. 02. 23.(금)(17:3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접수기관 및 방법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고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

○ 접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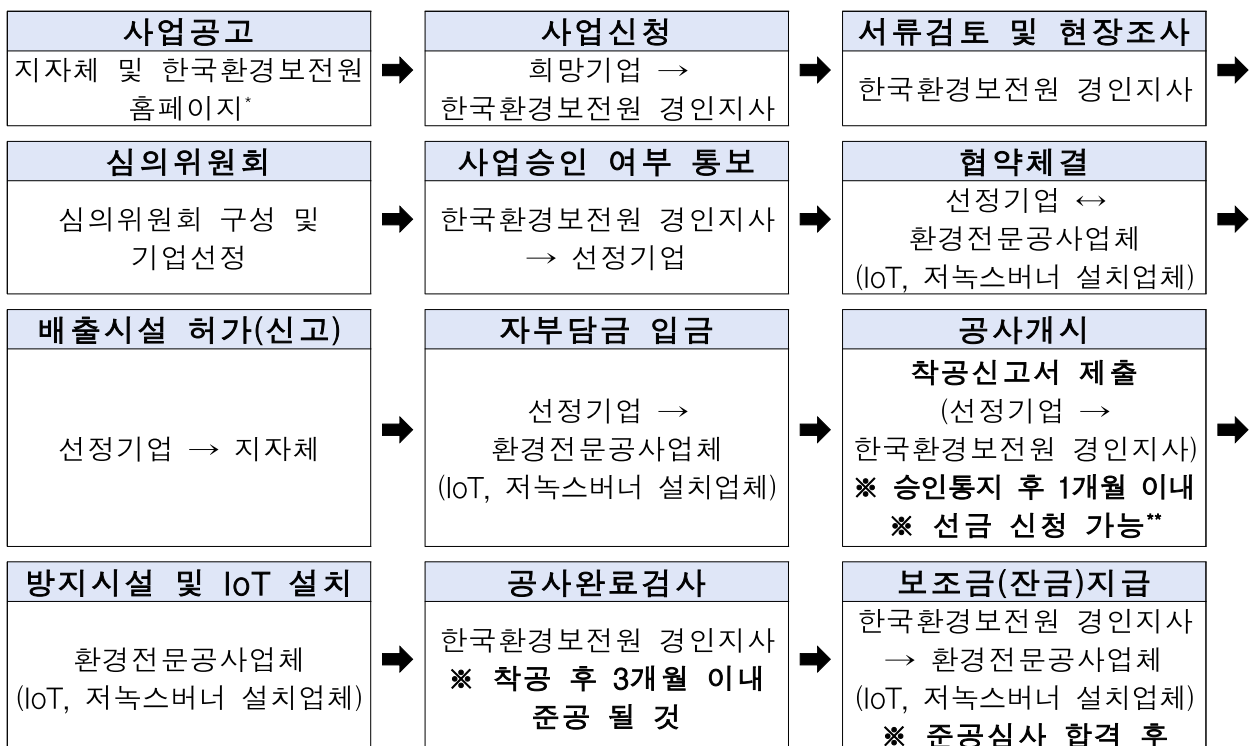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물인터넷의 경우, 방문접수 순서대로 접수증 배포(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keci.or.kr, 사물인터넷 제외)

○ 문의처 : Tel. 070-5222-2138, 2136, 2142, 2122

□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www.keci.or.kr>, 페이지 상단 배너 알림 홍보 클릭)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선금 신청 가능(사물인터넷 선금 신청 제외)

□ 사업장 제출서류 ※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제출

○ 사업 신청 제출서류 (대기오염방지시설, 배출구별 별도 제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유효기간 확인)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붙임 4]
 - 공사 소요금액 산출 세부내역은 excel 이메일로도 제출 요청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 증빙자료(과거이력 포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붙임 5]
- 사물인터넷 계측기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해당시설 최근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최근 1년간 자료, 면지 포함)
- 환경전문공사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6]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7]
- 보조금 반납 협약서(배출시설)[붙임 8]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 9]
-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붙임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 사전 기술진단 결과보고서(해당업체)

○ 사업 신청 제출서류 (저녹스버너, 저녹스버너별 별도 제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해당업체)[붙임 3]
-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해당업체,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유효기간 확인)
- 저녹스버너 설치계획서[붙임 4]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 증빙자료(과거이력 포함, 해당업체)
- 이행확인서(신청업체, 시공업체 각각 작성)[붙임 5]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 보조금 반납 협약서(신청업체)[붙임 7]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 8]

-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붙임 9]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 1](IoT 게이트웨이별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붙임 4](IoT 게이트웨이별 별도 제출)
- 사물인터넷 계측기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업체)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5]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 보조금반납확약서(배출업체)[붙임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 협약서
 - 착공신고서
 - 선금금청구서
 -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사물인터넷 제외)
-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 등)
 - 사물인터넷(IoT) 부착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증빙자료
-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지원안내 및 서식》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www.keci.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상단 배너 알림홍보 클릭!!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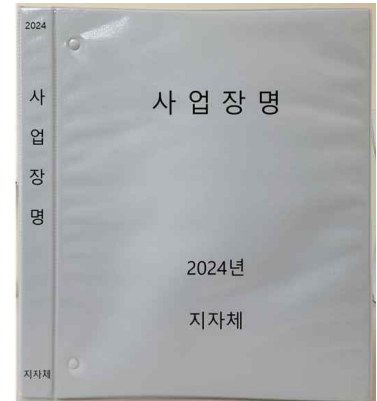
1. 방지사설

※ 사업신청서 총 1부 바인더 제출 요망

※ 배출구별 별도 바인더 제출 요망

(1순위 및 2순위 등 구분, 사업신청서 별도제출) ⇨

(우측 샘플 참고)



2. 사물인터넷(저녹스버너 포함)

※ 사업신청서 총 1부 정부화일 제출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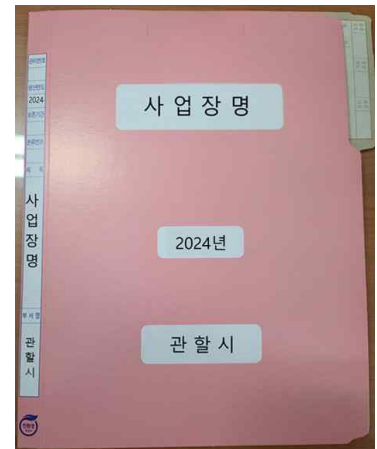
※ 사업장별 1개 게이트웨이 기준으로 제출 요망

(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별도 제출, 공통서류 1부만 제출)

※ 저녹스버너의 경우 사업장별 1개 정부화일 제출

(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별도 제출, 공통서류 1부만 제출)

(우측 샘플 참고)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구비서류 보전원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 이메일(cleanair@keci.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xlsx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 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 사업승인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 최종설치계획서(접수하신 사업신청서 전체, 도면,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cleanair@keci.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설치계획서.pdf
지역명_사업장명_변경신청서.pdf(해당 시 제출)

○ **준공완료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 최종준공보고서(준공 완료된 준공보고서 전체, 도면, 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세부거래명세서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cleanair@keci.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준공보고서.pdf

6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최대 9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10%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등 5.6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및 응축시설(수냉식) 보조금 지원 한도 5.6억원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철거비, 기타 공사(기타경비), 시운전비, 자재업체 경비·이윤·일반관리비 반영 제외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 포함하나 예비용은 제외

- 방지사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
- 기존 덕트공 외의 덕트 설치를 위한 벽체 타공비 제외
-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와 도장시설의 바닥공사 및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버터 설치는 원칙적으로 미지원 대상이나, 도장시설(배출시설)은 인허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버터가 설치된 방지사설 지원 가능
-

□ 방지사설 종류 · 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방지사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사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 ³ /분	3,300	2,970	1,650	1,320	
	200m ³ /분	4,700	4,230	2,350	1,880	
	300m ³ /분	6,300	5,670	3,150	2,520	
	400m ³ /분	7,500	6,750	3,750	3,000	
	500m ³ /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m ³ /분	1,200	1,080	600	480	
	200m ³ /분	2,300	2,070	1,150	920	
	300m ³ /분	3,000	2,700	1,500	1,200	
	400m ³ /분	3,800	3,420	1,900	1,520	
	500m ³ /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m ³ /분	3,500	3,150	1,750	1,400
		200m ³ /분	4,600	4,140	2,300	1,840
		300m ³ /분	6,100	5,490	3,050	2,440
		400m ³ /분	7,400	6,660	3,700	2,960
		500m ³ /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m ³ /분	3,800	3,420	1,900	1,520
		200m ³ /분	5,000	4,500	2,500	2,000
		300m ³ /분	6,700	6,030	3,350	2,680
		400m ³ /분	7,900	7,110	3,950	3,160
		500m ³ /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m ³ /분	1,600	1,440	800	640	
	200m ³ /분	2,900	2,610	1,450	1,160	
	300m ³ /분	3,500	3,150	1,750	1,400	
	400m ³ /분	4,400	3,960	2,200	1,760	
	500m ³ /분	5,000	4,500	2,500	2,000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RTO (축열식소각로)	100m ³ /분	14,500	13,050	7,250	5,800
	200m ³ /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m ³ /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m ³ /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m ³ /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m ³ /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m ³ /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m ³ /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m ³ /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m ³ /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선택적촉매환원법)	100m ³ /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m ³ /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m ³ /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m ³ /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m ³ /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859천원	2,572천원	1,429천원	1,143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5,058천원	4,552천원	2,529천원	2,023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488천원	5,839천원	3,244천원	2,595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77천원	6,728천원	3,738천원	2,990천원
	1톤이상 2톤미만	7,535천원	6,781천원	3,767천원	3,014천원
	2톤이상 3톤미만	9,582천원	8,623천원	4,791천원	3,832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1,789천원	10,609천원	5,894천원	4,715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4,416천원	12,974천원	7,208천원	5,766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5,253천원	13,727천원	7,626천원	6,101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6,818천원	15,136천원	8,409천원	6,727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8,077천원	16,268천원	9,038천원	7,230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20,032천원	18,028천원	10,016천원	8,012천원	
10톤이상	21,658천원	19,492천원	10,829천원	8,663천원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기집진시설	100m ³ /분	19,100	17,190	9,550	7,640
	200m ³ /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m ³ /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m ³ /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m ³ /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m ³ /분	6,000	5,400	3,000	2,400
	200m ³ /분	8,900	8,010	4,450	3,560
	300m ³ /분	11,500	10,350	5,750	4,600
	400m ³ /분	14,100	12,690	7,050	5,640
	500m ³ /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m ³ /분	2,697	2,427	1,349	1,079
	200m ³ /분	3,928	3,535	1,964	1,571
	300m ³ /분	4,787	4,308	2,394	1,915
	400m ³ /분	6,239	5,615	3,120	2,496
	500m ³ /분	7,568	6,811	3,784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총당하여야 함
-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주7)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총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 여과집진기 300m³/분 초과, 400m³/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m³/분(6,028만원)과 400m³/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 시설용량 360m³/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 300m³/분 설치비 + 10m³/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 ◇ 여과집진기 500m³/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m³/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00/500= 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m³/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 시설용량 500m³/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m³/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 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구 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입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 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문의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 ³⁾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